

##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제3항에 의거 부존재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, 통지받는 자가 사망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통지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4. 5. 8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

- 공고명: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4. 5. 8.(수) ~ 2024. 5. 23.(목)
- 직권말소일: 2024. 5. 3.(금)
- 공고내용

처분의 제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				
당사자 및 주소	당사자	이*수					
	주소	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2-49					
처분 원인	해당 대지 내에 건축물 1동만 존재 (건축물대장 상 2동)						
처분 내용	건축물대장 1동 직권말소 처리	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제3항						
의견제출	제출처	기관명	마포구청	부서명	건축지원과	담당자	김희철
		주소	마포구 월드컵로 212(성산동)			전화번호	02)3153-9424
		전자우편 주소	heecjf2002@mapo.go.kr			팩스번호	02)3153-9448
	제출기한	2024년 5월 23일까지					

- 문의사항: 마포구청 건축지원과 ☎02-3153-9424, FAX 02-3153-9448

붙임 의견제출서 1부. 끝.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### 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